

#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## 1. 개정이유

건설기계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「건설기계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65호, 2023.4.18. 공포, 10.19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건설기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표 2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, 지자체 등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3조제1항 및 제2항)
- 나.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비를 한 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(안 제31조제4항)
- 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제작·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등 현행화(안 별표 11, 별표 13, 별표13의 2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8.4. ~ 9.14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심의 요청

##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4항 중 “정기검사신청서”를 “정기검사신청서 및 제20호의10서식의 정비확인서”로 한다.

제9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(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
2.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별표 11의 기술인력·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의 명칭란 제1호 중 “건설기계기사”를 “건설기계설비기사”로 하고, 같은 란 제2호 중 “건설기계산업기사”를 “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”로 한다.

별표 13 중 기술자의 명칭란, 제원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	1인 이상
건설기계정비기능사	2인 이상

별표 13의2의 기술인력의 명칭란 제2호가목 중 “건설기계산업기사”를 “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”로 한다.

별표 23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전산자료의 이용	
가. 실시간 자료	1대에 대하여 10원
나. 배치성 자료	1byte에 대하여 0.00005원

별지 제20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3조 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



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(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

2. 재해의 발생 등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